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한창민 · 신장식 · 최혁진  
백선희 · 용혜인 · 정혜경  
윤종오 · 김종민 · 박정현  
김현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각 처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 식별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평가하는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

장하지 못하고 있고, SNS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여부 판단 시 정보주체의 관점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제1호나목).
- 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 다.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하나로 명시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여 국제 규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마.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3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개인을”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개인을”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말한다.

제4조제6호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29조, 제30조”를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설계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2.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범위·목적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 기본설정을 통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기본설정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로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기본설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기본설정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1의3. 프로파일링 여부

제33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장등”이라 한다)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장은”을 “공공기관장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 범위 · 목적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⑫ 공공기관장등은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인공지능”을 “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5호 중 “제29조”를 “제29조 · 제2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3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u>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u></p> <p>1의2. ~ 2. (생 략) <u>&lt;신 설&gt;</u></p> <p>3. ~ 8. (생 략)</p> <p>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p> <p>1. ~ 5. (생 략)</p> <p>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p>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 략)</p> <p>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p>	<p>1의2. ~ 2. (현행과 같음)</p> <p>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말한다.</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u> ----- ----- ---</p>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p>
--	---	--

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  
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  
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  
용한다. . 이 경우 “개인정보처  
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 <신 설>

조, 제29조의2, 제30조

제29조의2(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거나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설계해야 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범위

• 목적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 기본설정을 통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기본설정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로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기본설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기본설정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  
-----

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1의3. 프로파일링 여부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장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장등”이라  
한다)는-----  
-----  
-----  
-----  
-----

<p>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u>공공기관의 장은</u>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 ----- -----. <u>공공기관장등</u> <u>은-----</u> -----.</p>
<p>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 ----- -----.</p>
<p>1. ~ 3. (생 략) <u>&lt;신 설&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생 략) ④ ~ ⑩ (생 략) ⑪ <u>공공기관</u> 외의 개인정보처 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 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p>	<p>4.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범위 · 목적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u>공공기관장등</u> ----- ----- ----- ----- -----. ⑫ <u>공공기관장등은 영업비밀</u></p>

	<p><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u>  <u>공개하여야 한다.</u></p>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u>개인정보</u> 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  -----  -----<u>개인정보 및 그</u>  <u>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u>  -----  -----.</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u>개인정보</u> 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p>② -----  -----<u>개인정보 및 그</u>  <u>처리 정보</u>  -----  -----  -----  -----.</p>
③ ~ ⑤ (생략)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u>처리</u> 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p>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  -----<u>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u>  <u>하 이 조에서 같다)</u>  -----</p>



